

의안
번호

52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0. 17.

전문위원 김동성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오중균의원 외 15명

나. 의안번호 : 제525호

다. 제출일자 : 2025. 9. 25.

라. 회부일자 : 2025. 10. 14.

2. 제안이유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9. 30. ~ 2025. 10. 4.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정안 내용은 본 조례 제12조에 제3항 조문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산을 취득·처분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와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임.

〈안 제12조제3항 개정 전·후 비교〉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② (생 략)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p>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 또는 처분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처분한 경우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재산의 보고·통제 절차가 미비함.
- 따라서 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계획에 미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은, 중요 재산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통제 기능을 확보하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 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 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 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위한 입법적 보완 조치로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통상적인 견제·감시 권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시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